

공직자들의 청렴韓 생활

2020. 9.

강사 정수효



Chapter 1

한국사회 청렴수준

- 한국사회 청렴수준

10억

잘못을 저지르고 1년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

■ 한국사회 청렴수준

57%

2019년 청소년 정직인식지수 조사, 고교생 응답(투명사회본부)

■ 청소년 정직인식 지수



20대까지 계속 악화(51.8) 이후 30대부터 상승 ⇒ 50대 66.5

■ 국민 부패인식도 조사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든 것



52.1%

부패가 현재보다 늘어 날 것



9.4%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

성희롱, 갑질 등 엄벌



Chapter 2

생활상식!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생활상식

●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법!

-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 정(情)의 문화를 부정하는 것

-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업무처리 ⇒ 신뢰에 의한 업무처리

● 제공자도 처벌하는 법으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청탁금지법 규정

일반조항

제8조 제1항

직무 관련성, 대가성 불문

동일인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제8조 제2항

직무 관련성 전제, 대가성 불문

직무 관련자

금품수수 불가



청탁금지법 규정

일반조항

제9조 제1항(신고 및 처리)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



수수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

청탁금지법 규정

예외사유

(1)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 제공 금품 등

이○○ 지검장 사건

법무부 검사 ← 검찰청 지검장 / 108만원

● 직무상 상하 관계이면 되고,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 관계로 한정 ×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예산으로 제공하는 금품도 허용범위 내 가능
- 다만, 예산 관계 법령위반에 대한 위반 여부는 별개 문제로 판단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 가액 범위내 금품등

- 직무 관련성을 전제 / 직무 관련자와 식사, 선물 등은 당해 조항

- **민감한 시기**는 가액범위 내도 불가(공정한 업무수행 현저히 저해)
 - 감사, 평가, 예산결정 시기 / 공사계약 수행 중 등

-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 가액범위라도 불가
 - 따라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가증권은 절대 불가**

● 직무 관련성

- (판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 관련성의 판단기준

- (판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청탁금지법 규정

예외사유

● 상호접대의 경우 상계 인정

● (판례) 상계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상호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를 인정

● (판례) 공직자 A는 직무 관련자가 7만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각자 내자.”고 반환의사를 지체 없이 나타냈으나 해당결재를 즉시 취소하지 않고, 5일 후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천원을 반환 (과태료 2배)

■ 청탁금지법 규정

예외사유

● 여러 사람이 각출한 선물의 가액

● (사례) 추석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내 부서 직원들 10명이 2만원씩 각출하여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제공한 경우

(직무 관련성) 인정 / (목적) 추석을 맞이하여 가액범위 내 선물 가능

(사안) 20만원은 가액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 다수인이 각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금액이 가액범위내(5만원)이어야 함(수수자 기준)

청탁금지법 규정

예외사유

- 직무 관련자임을 모르고 참석한 공직자 A



- 공직자 A의 **식사비용을 합산**하여 공직자 B가 제공 받은 것으로 계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

VS

직무 관련성이 상당한 자

- 과장 등 결재라인 간부
- 인사, 평가, 감사, 예산, 조직부서 직원 및 간부

- 근평, 성과급 등급 결정 기간
- 인사, 평가, 감사, 예산, 조직 등 실시 기간

학교 선생님 등



상시 제한

■ 공공기관내 식사, 선물의 기준

직무 관련이 없는 직원



1회 100만원까지 가능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맘껏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

근평, 승진심사 등 기간 중



가액범위 내라도 불가

■ 공공기관내 경조사비

A. 직무 관련이 없는 직원



1회 100만원까지 가능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액 제한 없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화환 10만원)

근평, 승진심사 등 기간 중



상호부조, 미풍양속, 시기 불특정

청탁금지법 규정

예외사유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민법 제777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사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 4촌 형이 제공

(5) 공직자등의 상조회, 동호회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

- 대표자가 존재하고 회칙 등 내부규정이 존재할 것
- 제공 금품 등이 회비에서 지출되어야 함, 일부 구성원의 후원이 아닐 것

청탁금지법 규정

예외사유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 보조금 공식적 행사(워크숍)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여비, 숙박 등 지원?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판단 : 기관의 로고 여부

(8)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Chapter 3

외부강의 관련

■ 외부강의등 관련

외부강의란?

직무 관련성

요청 받은

강의(토론회, 공청회, 기고)

강의형태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

회의형태

자발적 기고문

국책기간에서 자문

외부강의가 아니면?

외부강의등 관련

외부강의 신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신고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초과사례금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 과태료

(판례)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아 과태료 40만원 부과

-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에 **초과 사례금 4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

※ 기타 사안에서는 4백만원 ~ 5백만원 부과된 점을 감안

■ 외부강의등 관련

●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 불필요, 횡수에 불포함

●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없는 유형(외부강의 ×)

-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시험출제 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Chapter 4

공직자 행위기준

■ 공무원 행동강령 개요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



직무수행 과정 내외 →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사익, 이해충돌 등 갈등상황 →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

■ 청탁금지법 VS 행동강령 청탁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

상대 공직자로 하여금 ①법령을 위반하게 하여 ②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여 ③ 정상적 거래 관행을 위반하게 하여

행동강령상 부당 청탁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알선청탁 금지 / 인사청탁 금지

■ 부정청탁 관련 사례

(사례) 공직자 A는 지방의회 의원실 B를 통해 교육청 직원 C에게 교육청 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천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수련원 객실 1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청탁(청주지법)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됨

■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 관련

제11조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의 금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 (사례) 공직자 A가 민간 대기업에 다니는 대학동기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을 청탁 →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님

■ 기타 행동강령 관련

제5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 관련 영리활동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활동을 중지, 종료하도록 조치

-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노무,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기타 행동강령 관련

- 직무 관련이 없는 영리행위 →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다음 각 호에 종사함으로써 **직무능률이 저하**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 추구
2. 1호 목적의 사기업체 이사, 감사를 집행하는 지배인, 임원 등이 되는 것
3.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임대업, 책 발간, 대부업 등 영리행위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기타 행동강령 관련

제5조6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
(사후신고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

-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 또는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 신고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신고

기타 행동강령 관련

제7조6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무원은 여비, 업추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모임에 사용,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 사용

- 위생업종(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업종(골프장, PC방 등), 사행업종(카지노, 오락실 등)

- 클린카드의 심야 사용(11시 이후)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위반

■ 기타 행동강령 관련

제13조 공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 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관용차량을 사적인 출퇴근 용으로 사용, 병원진료에 이용(사고)

- 기관 차량을 예산으로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골프채 편취(×)

- 행정 지도선을 주말에 지자체를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사적 사용

기타 행동강령 관련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통지
3. 신문, 방송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 또는 내부통신망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직무 관련자가 볼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는 위반



Chapter 5

공무원 갑질 관련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갑질”이란?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자신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정서적·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통칭

갑질의 유형

1. 인허가 등 담당자의 직무 관련자에 접수 지연, 거부행위 등 갑질

2. 조직내 상급자가 하급자에 직무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 등 갑질

3. 직무 관련자, 소속·산하 기관에 대한 포괄적 갑질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사례 분석

2019년 한 해 동안 **갑질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 **총59명**

● 위반자 중 가장 큰 비중의 계층?



팀장급, 67.8%(40명)

● **내부직원 갑질 43명(84.3%)**, 납품업체 등 직무관련자 갑질 8명

● **중징계 29명(56.9%)**, 경징계 22명(43.1%)  **포상감경 ×**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관련 규정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의 금지

제1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기관(감독, 감사, 조사, 평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다음 각호에 대하여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 제공요구

2.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또는 의전 요구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갑질 사례

- 공무원 B는 소속 부서 계약직 직원에게 자신이 취득을 준비하고 있던 자격증 관련 사이버 교육을 대리 수강하도록 하고 시험도 대신 치르도록 요구
- 공직자 A는 자신의 자녀 결혼식(공휴일)에 소속 직원들에게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을 접수하고 정리하는 일을 지시
- 청소업체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체 미화원들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 편의를 제공 받음



Chapter 6

공무원 성비위 관련

공무원 성희롱 내용 및 관련 법령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 성희롱 건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성희롱, 성폭력이 확인될 경우 직위해제

-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다른 직위로의 전보 /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 감사, 감찰, 인사, 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 포상감경 × (징계령)

■ 성비위 관련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18.5.29.)

- 공무원의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

→ (현재) 경징계(감봉) 가능 → (개정) **정직 이상 중징계**

-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

- 2019.4.17부터 성추행, 성폭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당연**

퇴직(3년 이내 공직취임 불가, 대상이 미성년인 경우 영구 취업불가)

- **성 관련 범죄도 중대범죄로 포상으로 감경이 안됨**

■ 공무원 성비위 사례

(사례 1) 출근하던 공직자 A씨, 늦잠을 자서 지하철 역까지 뛰어가서 막 도착한 지하철 탑승하여 여성 뒤에 서서 숨을 급하게 내 쉬어서 성 추행으로 고발
- A는 강하게 부인했고 경찰조사에서 감형을 위해 합의를 보라고 해서 합의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 감봉 1월

(사례 2) 모 지자체 팀장은 직원들과 회식하는 장소에서 결혼한 남자직원들에게 주중 성관계 횟수를 물었고 남자 직원이 성희롱으로 신고

● 성희롱 → 경징계

(사례 3) 공직자 A는 과 회식 후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과 2차로 술을 마시고 강제로 키스

● 품의유지 의무 위반 → 중징계



Chapter 7

맏으며..(현장경험)

■ 청렴 위반은 동료 등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된다.

● 회사 동료나, 이웃 주민 등 제보로 문제가 된다.

● 수사기관에서 공직자 범죄사실 통보 → 승진심사 불이익

● 수수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 과태료 → 승진심사 불이익

■ 공공기관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통보

● 형사범죄는 범죄사실이 통보되므로 주의 → 음주, 보복운전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수사기관 범죄사실 통보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사기관 범죄사실 통보(2016.9월 개정)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의 수사기관 범죄사실 통보 → 승진임용 절차 Stop

■ 공직자 징계에 대한 포상감경

(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포상 등 공적에 의한 징계의 감경

● 사무관 이상

-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 6급 이하, 6급 상당

- 청장표창, 광역 자치단체, 교육감 이상 표창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포상감경이 안되는 비위

●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금품수수, 횡령 및 유용, **갑질** 등
중대범죄

■ 청렴의무 위반 사례.

● 회의 준비 스타벅스 카드 충전 사용 → 경징계

● 구내식당 특근매식비 결재, 본인카드 충전 → 경징계

● 문구점에서 구입한 노트북을 중고사이트에 매매 → 중징계

● 조사관 피조사자로부터 커피 한잔 수수 → 경징계

청렴의무 위반 사례.

● 과장이 공사 업체와 식사자리에 비자발적 참석 → 경징계

● 민원 종결 후 음료수 9천700원 수수 → 과태료부과(2배)

● 보조금 담당이 금품 반환 → 미신고로 징계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기관 협의 시 공문서 작성시 주의

에스키모 늑대 사냥법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에스키모 늑대 사냥과 비슷하다.

식사와 같은 작은 향응에서 시작하여 향응의 달콤함에 청렴의식을 잃어버리고 계속하여 부패를 행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기도 한다.

더치페이 문화의 확산...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